

<p>제2019-162호 2019년 8월 29일(목)</p>	<p>시  보 여수시</p>	<p><b>시 정 지 표</b>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청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9-2110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3
○ 여수시 공고	제2019-2115호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5
○ 여수시 공고	제2019-2116호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6
○ 여수시 공고	제2019-2121호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 송달 공고(2019.7월 적발분)	43
○ 여수시 공고	제2019-2123호	도로지정공고(여수시 여서동 103-8번지 외1필지)	44

회 람								
--------	--	--	--	--	--	--	--	--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준공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29.

여 수 **시**장

1. 사업시행지 위치: 여수시 관문동 978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여수시 관문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개설
3. 준공 면적 또는 규모
  - 가. 사업규모: L=77m, B=16m
  - 나. 사업면적: 1,269.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골드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은동
  - 나.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사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가. 착수년월일: 2016. 8.12.(실시계획인가고시일)
  - 나. 공사완료일: 2019. 8.22.
6. 준공토지조서: 붙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공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1	관문동	805-5	도	32	1,269.2	골드종합건설(주)	광주광역시남구천변좌로398(사동)	
2	관문동	805-6	대	143		골드종합건설(주)	광주광역시남구천변좌로398(사동)	
3	관문동	711-2	도	7		골드종합건설(주)	광주광역시남구천변좌로398(사동)	
4	관문동	705-2	도	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5	관문동	706-2	도	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6	관문동	711-5	대	119		골드종합건설(주)	광주광역시남구천변좌로398(사동)	
7	관문동	711-4	대	5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8	관문동	712-1	대	14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9	관문동	713-1	대	6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0	관문동	714-1	대	69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1	관문동	715-4	도	49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12	관문동	715-5	대	13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	관문동	719-1	도	3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14	관문동	745-1	대	13		골드종합건설(주)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사동)	
15	관문동	722-2	대	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16	관문동	702-2	대	9		여수시		무상귀속
17	관문동	978-1	도	145		여수시		무상귀속
18	관문동	705-4	도	5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19	관문동	706-6	도	3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20	관문동	711-3	도	20		골드종합건설(주)	광주광역시남구천변좌로398(사동)	
21	관문동	710-2	대	8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22	관문동	653-6	도	9		국(기획재정부)		무상귀속
23	관문동	715-6	대	9		골드종합건설(주)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사동)	
24	관문동	715-2	도	13		골드종합건설(주)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사동)	
25	관문동	716-9	도	5		국(기획재정부)		무상귀속
26	관문동	716-8	도	51		국(기획재정부)		무상귀속
27	관문동	718-1	임	2		국(기획재정부)		무상귀속
28	관문동	641-6	임	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29	관문동	805-4	대	2		골드종합건설(주)	광주광역시남구천변좌로398(사동)	
30	관문동	748-1	대	1		골드종합건설(주)	광주광역시남구천변좌로398(사동)	
소계		30 필지			1,269.2			

##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여수시장

1. 사업기간 : 2019. 9. ~ 2020. 6.

###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9. 8. 29. ~ 2019. 9. 17. (12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기존주택 및 신축예정지 사진

### 3. 지원 대상

- 대상지역 : 농촌지역(읍.면의 지역, 동(洞) 지역 중 녹지지역)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자로서 세대주인 자
    -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인 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4. 지원 기준

- 사업규모 : 6동(주택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 사업범위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 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용도는 주거용(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만 가능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상가 등 혼용 제외
  - 기존주택(무허가 포함) 철거 이행(귀촌자 및 무주택자는 해당 없음)

####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세금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전액면제)  
취득세액 280만원 초과(280만원 공제)
- 지적측량수수료 :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6. 용자조건

- 대출한도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 : 최대 1억원
  - ※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건축법」상 건축신고 등을 이행하는 건축행위
  - ※ 용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7. 지원 절차



## 8. 기타 유의사항

- 가. 철거예정 건축물에 담보 설정, 보존 필요, 민·형사상 분쟁중인 건축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나. 건축물대장, 등기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라. 접수하신 서류는 반환, 수정, 보완 등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마.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허가민원과(659-4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연락처 :

## 주택건축 계획

- 구분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해당 체크)
- 위치 : 여주시 읍·면·동 리 번지
- 대지면적 : m<sup>2</sup>
- 규모 : 층수 : 층, 연면적 : m<sup>2</sup>
- 구조 :
- 착공예정일 :

## 기존주택(철거대상)

- 위치 :
- 면적 및 구조 :
- 철거예정일 :

위와 같이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합니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 . .

신청인 : (인)

여수시장 귀하

# 사 진 대 장

사 업 명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사업위치	여수시		
사업위치	위치도		
사업 전	현장 또는 기존건물 사진 촬영		

##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무주택자 확인 각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아래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 및 세대원의 무주택 사실이 허위로 판명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용자대출자에 대하여는 대출금 회수조치 등

2019. . .

신청인 : (인)

담당직원 확인란
(인)

여수시장 귀하

#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1가구1주택자 확인 각서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에 해당)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세대원 전원을  
합하여 1가구 1주택자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아래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을 합하여 1가구 1주택자 사실이 허위로  
판명시 사업대상자 취소(세제혜택 취소 포함) 및 용자대출금 회수조치

20 . . .

신청인 : (인)

담당직원 확인란
(인)

여수시장 귀하

##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 철	-
		사무관 이재영	044-201-1558
		전문관 김두환	044-201-1559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기훈 계 장 이주섭	02-2080-7581 02-2080-7589
시·도 / 시·군	건축 또는 민원부서		

\*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 절차, 건축 등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의 건축 또는 민원 관련 부서로, 용자(대출)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용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중금리와 용자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용자대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용자정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불가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주택개량 사업대상자와 신축·개량하는 건축물의 소유주가 동일인 이어야 함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및 대출기관의 여신규정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 전에 관할 시·군·구에 소재한 농·축협에 용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실시(대출가능액, 시기, 제출서류 등)
      -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 필요
      -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 불가
    -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
- ※ 2018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을 연장한 경우에는 2018년도 지침 적용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제55조제6호, 제67조,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500,000	500,000	550,000	550,000
농촌주택개량자금(융자)	500,000	500,000	550,000	550,000

# II.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가.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대상자 : 아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대상자와 신축·개량하는 주택의 소유주가 동일하여야 함)

1) 농어촌지역<sup>1)</sup>(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

-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인 자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인 자

\* 주택 취득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른 취득일을 말함

\*\* 융자금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의 경우 상기 1)~3)의 규정은 2020년 신규지구(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연도 기준)부터 적용

다.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전에 이미 건축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건축신고 전까지만 신청 가능)  
다만, '19년도에 한해 준공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 건축신고(허가)를 하였거나, 건축신고(허가)를 하지 않고 사전 건축행위를 한 경우

## 2. 사업대상지역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1)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 법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1) 읍.면의 지역
  -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15.12.23)
  - 3)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 3.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 이하

- 가.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
- 나.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 다.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 예시) 2층 건축물 1동 (1층 창고 및 차고, 2층 주택)
  - \*\* 예시) 1층 건축물 2동 (주동 : 단독주택, 부속동 : 창고 또는 차고 등)
- 라.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없음
- 마.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도의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 '주 건축물'은 상시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를 말함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바. 동일 필지 안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상가 등이 혼재되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과 맞지 경우에는 사업신청 불가

사.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상기 가.~사. 규정 위반 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용자금 회수

#### 4. 용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가. 용자대출한도

○ (대출한도)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 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① : 신축의 경우>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리모델링도 동일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8천만원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1억 2천만원

⇒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나 **사업실적 확인서 범위내에서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한도는 8천만원임'**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② : 신축의 경우>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리모델링도 동일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1억원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7천만원

⇒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나 **사업실적 확인서 범위내에서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한도는 7천만원임'**

- 선금(중도금) : 당해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 대출(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구분	선금	중도금	완공대출금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선금+중도금=최대 3,000만원 이내		최대 2억원 한도
증축·리모델링	선금+중도금=최대 1,500만원 이내		최대 1억원 한도

-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를 통해 대출 가능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

\*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 변동 적용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나. 사업실적확인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 \* 2018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을 연장한 경우는 2018년 시행지침 적용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 ① 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② 주택건축과 관련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 \* 주택도급계약을 한 주택건축사업자, 주택건축 공정별(토목, 건축, 설비, 전기, 조경 등) 사업자, 건축자재사업자 등
  - \*\* 세금계산서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준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자필·카드·현금 영수증	계산서

- 사업대상자가 공사를 직접 자가시공 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는 동일
  - \* 다만,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자가시공시 노무비**는 총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가 직접 작성한 것과 동일한 증빙으로 인정가능 (총사업비가 1억원 초과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 불허용)
  -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시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자의 가족은 1인에 한해 총사업비의 1/10 한도 내 인정

다. 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제출 시 해당 사업장의 담보(토지 등) 가능 한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3,000만원 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500만원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 해당 사업장의 담보 부족시 다른 담보 물건 등으로 추가 담보 가능
- 단, 해당 사업장의 토지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이 외의 물건 등으로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
- 농협은 선금수령자 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선금을 대출받은 사업대상자가 취소된 경우, 시·군·구는 취소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기 지급한 선금을 즉시 회수 조치

라. 토지구입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지원 가능
- \* 토지매입비는 주택건축 완료 후 대출 시 사업실적확인 금액(주택건축비)에 미포함

-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대출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7> 제출

##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세금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까지 감면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 \* 2018년 사업대상자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따름(취득세 감면, 재산세는 부과)
  - (지적측량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 시·군·구 지적측량고객담당에게 신청(지자체 발급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필요)
    -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자 선정일 이전 측량은 소급적용 불가
- ※ 세금 및 수수료 감면은 해당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요건, 절차 등을 적용

## 6. 임대주택사업자 등 용자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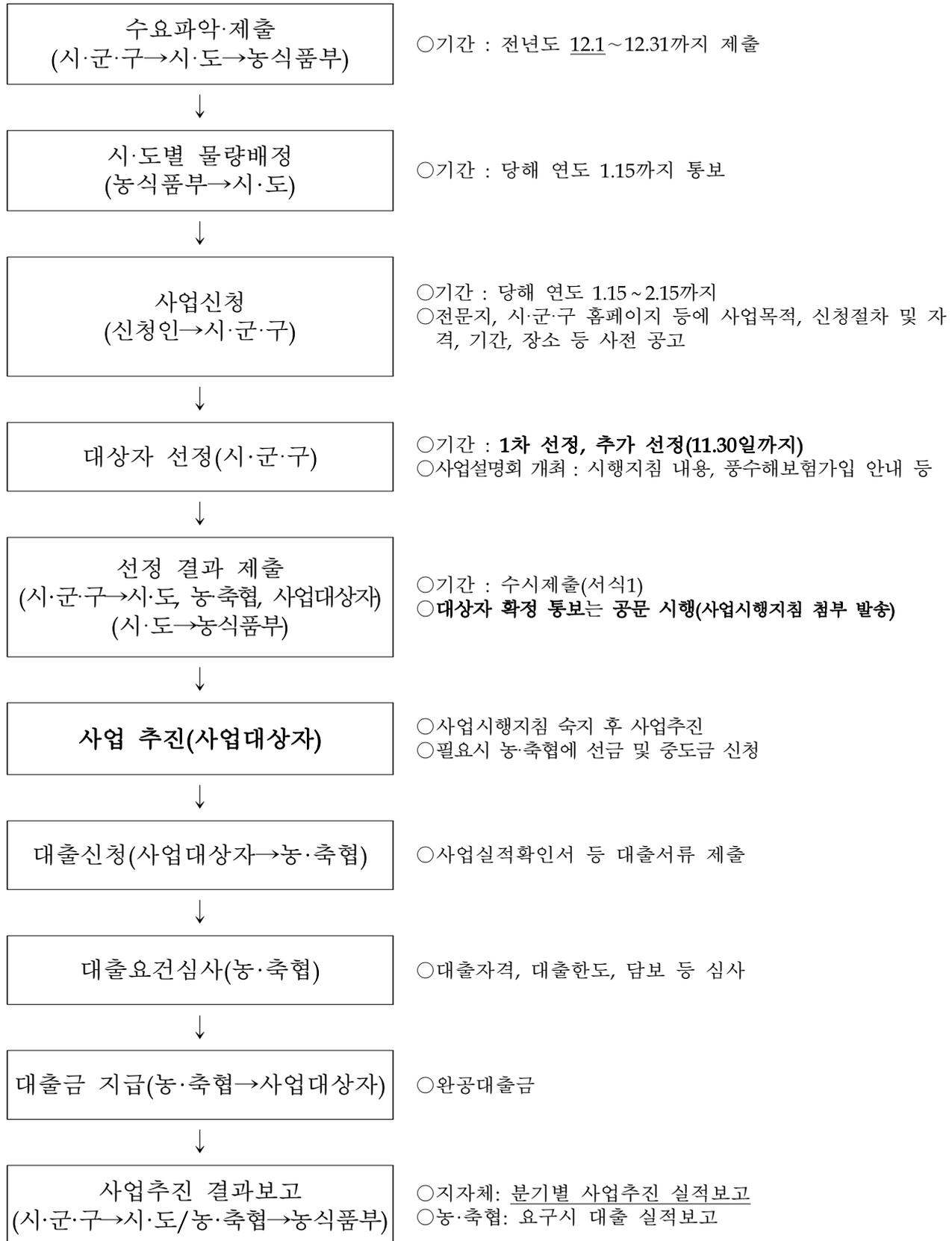
- (지원대상)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 입주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대표(법인)
- (필요조건) 대출신청 시 사업지구 전체 토지를 주택건축 예정 개별필지로 구분하여 필지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 신청
- 상기 항목 외에는 동 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 공통 적용

## 7.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시 처리

- 사업대상자가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며,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 \* (부정수급 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경우 등
  - \*\*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1년이상 사업 미추진 등

### Ⅲ. 표준프로세스(SP) 및 사업주체별 역할

#### 1. 표준프로세스(SP)



\* 사정에 따라 절차 병행 또는 일정 변경 가능

## 2.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 사항

### 가. 사업대상자

#### 1) 사업신청 전

- (사전상담 : 시·군·구) 주택건축 신고 및 인·허가 전에 사업대상자 대상여부 등 대해 시·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
- (사전상담 : 농협)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신용도, 담보가능금액, 대출서류,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건축업자에게 대출금 바로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농협 담당자와 사전 상담

#### 2) 사업신청

- 사업 신청 시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서약서<서식8>,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제출
- 농식품부의 다른 주택용자정책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용자대출을 받을 수 없음
  - 농식품부 이외의 부처 및 지자체의 주택용자지원 사업과 중복 용자 가능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 3) 주택건축

-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건축계약 등을 통해 주택건축을 추진하고, 주택설계, 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제작·보급하는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 주택설계도면으로 사용 가능
    - \*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문의처 :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042-610-1935)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하는 사업대상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철거 실적을 시·군·구에 제출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 **주택건축 및 용자대출은 '19.12.31일(연장시는 '20.8.31)까지 완료해야 함**
  - (사업연장) '19.12.15일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 해 사업기간 및 용자대출기한을 '20.8.31일로 연장 신청가능<서식4>
    - \* 사업연장자는 '20.8.31일까지 용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0.6.30일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
  - (사업포기·취소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사업포기 처리,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취소 처리하며 용자대출 및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
    - \* 기 지급받은 대출금은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 조치

#### 4) 용자대출

-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농·축협에 용자대출 신청
  - (사업실적확인)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자가시공자도 동일)

- \* 사업실적확인서 제출시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포함 제출
- (대출신청) 사업대상지 관할 농·축협에 용자대출 신청
- \* 사업실적확인서,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자 각서(서식7), 기타 여신규정에 따른 서류 등
- (용자재원 소진시) 당해 연도에 용자대출 재원이 소진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대출가능
-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조성사업 등의 입주(예정)자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사업대상자 명의로 개별등기 완료 후 용자대출 가능

#### 5) 사업대상자 자격변동시 통보 의무

- (자격변경시 통보) 용자대출금 전부 상환 이전에 사업대상자의 사망, 상속, 증여, 매매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관할 시·군·구 및 농협에 바로 통보
- 위와 같은 변동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는 직계 가족 등에게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개량한 사실을 알려야 함

#### 나. 시·군·구

##### 1)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수요조사,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자,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
  - 무주택자 조건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무주택자 확인 각서<서식8>를 징구
  - ※ 농지원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의무제출 요구 금지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절차, 사업시행지침,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세제 혜택, 사업실적확인서 발급방법, 풍수해보험 등에 대해 사업대상자에게 설명하여 민원 사전 예방
  - \* 추가 선정하는 사업대상자에게는 개별 설명 실시
  - 특히,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전달(서면 발송)**하고,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
-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후보를 확보하고, 이미 선정된 사업자 이외에 추가 수요가 있을시 시·군·구에 배정된 물량에서 자체 조정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도에 배정된 물량에서 시·군·구간 조정을 시·도에 요청
  - 1차 선정 후의 **추가 선정은 '19.11.30일까지(농식품부 통보일 기준) 가능**
  - 추가 선정시 시·군·구에서는 추가 선정 내역을 시·도 및 농협에 통보

##### 2) 주택건축

- 주택설계, 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등
- 선금, 중도금 등 용자대출에 필요한 서류(사업실적확인서 등)를 발급하고, 선금수령자가 사업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선금 수령자가 선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용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후 농협에 용자대출금 지원 철회대상자로 통보
- 사업대상자가 선정 연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9.12.15일까지** 연장조치하고 사업연장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 대상 주택의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반드시 표기

### 3) 기존 노후주택 철거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하는 사업대상자의 기존주택 철거여부 확인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징구
- 기존 노후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협조

### 4) 용자대출

- 용자 대출 기한 관련 아래 사항을 사업대상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안내

※ 주택건축 및 용자대출은 **'19.12.31일까지** 완료해야 함

- 다만, **'19.12.15일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사업기간 및 용자대출기한을 **'20.8.31일까지**로 연장 신청 가능
-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연장자는 **'20.8.31일 이후에는 용자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연장자는 **'20.8.31일까지 용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0.6.30일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

- 용자대출 재원 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 지원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 용자를 받기 위해 사업대상자가 작성·제출한 사업실적확인서와 증빙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건축(단독주택 + 부속건축물) 연면적 150㎡초과 여부를 확인, 초과 시 사업실적확인서 미발급
  -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을 농협에 공문으로 송부

## 주택신축 완료 보고(용자지원)

(단위:㎡)

대상자	신축 건축물						건축 여부
	위치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구 조	지붕	사용 승인	허가 (신고)일



# 사 진 대 지

사 업 명	2019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용자지원)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사업위치	여수시		
사업 전			
사업 중			
사업 후			

발급번호 제 호

##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m <sup>2</sup> )		구 조		
사업실적	사업내용	총투자계획 (A)	사업실적 (B)	공정률 (C=B/A)
		천원	천원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상기 건축물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위와 같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건축물에 대한 추진실적(착공준공(예정), 공정률)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건축허가권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금융기관에서 작성)

배정금액 (D)	기 대출액 (E)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천원	천원	* 중도금 대출 = $\text{Min}[\text{Min}(A,D) \times 50\%, \text{Min}(A,D) \times C](\Rightarrow [B,D]) - E$ * 잔금 대출 = $[\text{Min}(A,D) \times C(\Rightarrow [B,D])] - E$
		천원

# 공 고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행정상 입법 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 여 수 시 장

### 1. 개정이유

- 여수문화예술공원「예울마루」조성사업 중 2단계 조성사업(장도전시장 등)에 대한 기부채납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망마지역과 장도지역 예울마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예울마루를 망마지역과 장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 예울마루 정의를 신설(안 제2조)
- 예울마루 위치 및 시설을 망마지역과 장도지역으로 구분(안 제3조, 제4조)
- 예울마루 사용시간에 철야(22시 이후)삭제, 교육실, 창작스튜디오 및 작가숙소 포함(안 제5조)
- 예울마루 사용료에 교육실 포함 및 철야(22시 이후)삭제, 장도지역 포함(안 제7조)

### 3. 개정 조례안 : 별첨

### 4. 예고기간 : 2019. 8. 29. ~ 9. 17.(20일간)

##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besthee@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00(학동), 문화예술과

○ 연락처 및 담당자 : 전화 061)659-4754, 팩스 061)659-5855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김희영)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GS칼텍스 예울마루(이하 “예울마루”라 한다.)란 여수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여수시 망마 근린공원과 장도 근린공원 내에 GS칼텍스가 조성하여 공익 기부한 교양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예울마루는 망마 지역과 장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두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망마 지역 예울마루 :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100(시전동)에 둔다.
2. 장도 지역 예울마루 :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83-47, 49, 51, 57, 59, 67(웅천동)에 둔다.”으로 한다.

제4조(시설) ① 망마 지역 예울마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공연장 : 대극장, 그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
2. 일반공연장 : 소극장 및 부대장비
3. 전시시설 : 전시실 및 그 부대장비
4. 교육시설 : 교육실 및 기자재
5. 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장도 지역 예울마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공연장 : 야외공연장 및 부대장비
2. 전시시설 : 전시실 및 그 부대장비
3. 교육시설 : 교육실 및 기자재
4. 창작스튜디오 : 창작스튜디오 및 기자재
5. 편익시설 : 안내센터, 작가숙소 및 부대시설
6. 사무실 및 기타부속시설
7. 보행교량

제5조(사용시간) 예울마루의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도 지역 예울마루는 물때에 맞추어 사용허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시실 : 10시~18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공연장 : 오전(9~12시), 오후(13~17시), 야간(18~22시)
3. 교육실 : 10시~18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창작스튜디오 및 작가숙소(장도 지역 예울마루만 해당한다) : 입주 작가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허가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2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실 :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전 까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GS칼텍스가 공익기부한「GS칼텍스 예울마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위치)</b> GS칼텍스 예울마루(이하 “예울마루”라 한다)는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100(시전동)에 둔다.</p> <p><b>제3조(시설)</b> 예울마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합공연장 : 대극장, 그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li> <li>2. 일반공연장 : 소극장 및 부대장비</li> </ol>	<p>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p> <p><b>제2조(정의)</b> <u>GS칼텍스 예울마루(이하 “예울마루”라 한다.)란 여수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여수시 망마 근린공원과 장도 근린공원 내에 GS칼텍스가 조성하여 공익 기부한 교양 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u></p> <p><b>제3조(위치)</b> <u>예울마루는 망마 지역과 장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두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망마 지역 예울마루 :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100(시전동)에 둔다.</u></li> <li>2. <u>장도 지역 예울마루 :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83-47, 49, 51, 57, 59, 67(웅천동)에 둔다.</u></li> </ol> <p><b>제4조(시설)</b> ① <u>망마 지역 예울마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합공연장 : 대극장, 그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li> </ol>

3. 전시시설 : 전시실 및 그 부대장비
4. 교육장 : 세미나실 및 기자재
5. 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

제4조(사용시간) 예울마루 허가사용 가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 10시 ~ 18시로 하되, 필요시 야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공연장 : 오전(9~12시), 오후(13~17시), 야간(18~22시), 철야(22시 이후)

2. 일반공연장 : 소극장 및 부대장비
3. 전시시설 : 전시실 및 그 부대장비
4. 교육시설 : 교육실 및 기자재
5. 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장도 지역 예울마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공연장 : 야외공연장 및 부대장비
2. 전시시설 : 전시실 및 그 부대장비
3. 교육시설 : 교육실 및 기자재
4. 창작스튜디오 : 창작스튜디오 및 기자재
5. 편익시설 : 안내센터, 작가숙소 및 부대시설
6. 사무실 및 기타부속시설
7. 보행교량

제5조(사용시간) 예울마루의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도지역 예울마루는 물때에 맞추어 사용허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시실 : 10시 ~ 18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공연장 : 오전(9~12시), 오후(13~17시), 야간(18~22시)
3. 교육실 : 10시 ~ 18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창작스튜디오 및 작가숙소(장도 지역 예울마루만 해당한다) : 입주 작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 허가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여수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울마루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 통념상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장비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울마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노동 관련 행사 등 문화·예술 관련 공연 또는 전시로 보기 어려운 행사

**제6조(사용료)** ① 예울마루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울마루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시실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까지
  2. 공연장 :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전 까지.
- 단, 긴급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료 중 여수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제6조(사용허가 등)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① 예울마루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울마루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시실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까지
  2. 공연장 :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전 까지.
- 단, 긴급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3. 교육실 :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전 까지**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탁)** 시장은 예울마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능력 또는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예울마루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6. 10. 21.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관리위탁) 현행과 같음**

**제9조(관리운영지원) 현행과 같음**

**제10조(규칙)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공연장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대극장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사용구분	상세			금액	비고
공연 대관	순수예술	클래식/연극/무용	평일	일580,000원	
			주말/공휴일	일740,000원	평일의 약 120%
	복합장르	오페라/뮤지컬	평일	일760,000원	
			주말/공휴일	일960,000원	평일의 약 120%
	대중행사 (상업적 성격)	콘서트/행사	평일	일1,510,000원	
			주말/공휴일	일1,860,000원	평일의 약 120%
직접비	냉난방비			회당120,000원	1회 4시간 기준
	전기사용료			회당120,000원	1회 3시간 기준
기타	리허설/준비대관		오전 (09~12시)	기본대관료의 45%	종료시간 기준
			오후 (13~17시)	기본대관료의 60%	
			야간 (18~22시)	기본대관료의 80%	
			<del>철야 (22시 이후)</del>	<del>기본대관료의 150%</del>	
	철수 대관			공연종료 후 당일 3시간 무료	3시간 초과 및 익일 철수 시 준비대관료 적용

## 대극장 부대장비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품목	기준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녹음(CD)	1회	50,000원	CD 사용자 부담
	Wireless Mic	1ea	10,000원	핀 마이크/배터리 사용자 부담
	Dynamic Mic	1ea	5,000원	
	Condencer Mic	1ea	10,000원	
	Main Speaker	1일	100,000원	(L/C/R/Sub)
	Digital Mixer	1일	50,000원	
	Monitor Speaker	1ea	10,000원	
	Wireless Intercom	1ea	5,000원	총 4대 사용 가능
조명장비	Follow Spot XENON 2Kw	1ea	30,000원	보유 수량 3ea
	Strobe	1ea	10,000원	보유 수량 3ea
	Dry ice machine	1ea	10,000원	보유 수량 2ea dry ice는 사용자 부담
	Haze machine	1ea	10,000원	보유 수량 2ea 용액 사용자 부담
	2Kw Fresnel	1ea	2,000원	보유 수량 64ea
	S-4 Standard &Zoom	1ea	1,000원	보유 수량 stander- 264ea zoom- 96ea
	Par(64)	1ea	1,000원	보유 수량 70ea
	Par(46)	1set(8ea)	2,000원	보유 수량 7set(56ea)
	Beam Light	1ea	3,000원	보유 수량 4ea
	Upper, Lower Horizont Light	1set(4ea)	3,000원	보유 수량 Upper- 12set Lower- 12set
	LED Moving	1ea	20,000원	보유 수량 12ea
	무대장치	덧마루	33m <sup>2</sup>	100,000원
댄스 플로어		1식 1작품	200,000원	재료비 사용자 부담
스크린		1식 1작품	30,000원	
오케스트라 라이저		1식 1작품	100,000원	
영상장비	프로젝터	1ea	50,000원	12,000 ANSI
악기	스타인웨이 그랜드피아노	1대 1일	100,000원	조율비 별도

# 대극장 부대시설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품목	기준	사용료	비고		
야외공연장 (바닥분수)	순수예술/복합장르 공연		1회 5시간	1,200,000원	부대장비사용료 별도	
	대중콘서트/행사		1회 5시간	1,800,000원		
	전시/리셉션		1회 5시간	800,000원		
	준비/철수대관		일	700,000원	-	
기타공간	로비	대극장_일반 리셉션 (4F)	1회 3시간	400,000원	기타 집기 및 폐기물 처리비용 별도	
		대극장_대관자 리셉션 (4F)	1회 3시간	200,000원		
		소극장/전시장_일반 리셉션 (3F, 7F)	1회 3시간	300,000원		
		소극장/전시장_대관자 리셉션 (3F, 7F)	1회 3시간	200,000원		
		대극장/소극장/전시장_사인회 (3F, 4F, 7F)	1회 3시간	50,000원		
	야외 테라스	대극장 메인 출입구 (4F)	1회 4시간	700,000원	전기/조명/음향 장비 및 기타 집기, 폐기물 처리비용 등 별도	
		대극장 객석 2층 (5F)	1회 4시간	100,000원		
		오피스 (6F)	1회 4시간	350,000원		
		전시장 (7F)	1회 4시간	300,000원		
	리허설룸	리허설룸 1	1회 4시간	200,000원	대관계약조건 외 사용시 적용	
		리허설룸 2	1회 4시간	150,000원		
	분장실/락커룸/세탁실			1일 1실	50,000원	
	VIP실	6층 VIP실	1회 4시간	100,000원	1회 3시간 7인실 / TV	
		5층 VIP실	1회 4시간	100,000원	1회 3시간 4인실 화장실, 탕비대 완비	
스태프 추가 지원	음향/조명 디자인		1작품	1,500,000원	-	
	무대/조명/음향 등 기술인력 지원		1회 8시간	100,000원	-	
기타	촬영대관		4시간	3,000,000원	예술마루 전체 공간 적용	
	TV녹화 / 중계 (전시/공연관련)		1회	200,000원	녹화시설 사용료 (방송국 부담)	
	라디오/인터넷		1회	200,000원		
	환경 정리금		대관자 미반출시	200,000원	대관자 반출시 50,000원	
※ 사용자 부담	음향 녹음 시 CD 등은 사용자 준비					
	조명 포그머신 용액, 드라이아이스, 컬러필터 등은 사용자 준비					
	무대 댄스 플로어 사용시 부착테이프 및 인력은 사용자 준비					
	사용자 준비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사양으로 준비해야 함					
	무선마이크 배터리 : AA 배터리 6개 (1EA 당)					
	댄스 플로어 테이프 : haalequin (1통, 약 10L, 100,000원)					
	드라이아이스 : 사양 관계 없음 (1 box 2~3만원)					

## 소극장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사용 구분	상세			금액	비고
공연 대관	순수예술	클래식/연극/무용	평일	일310,000원	
			주말/공휴일	일390,000원	평일의 약 120%
	복합장르	오페라/뮤지컬	평일	일390,000원	
			주말/공휴일	일460,000원	평일의 약 120%
	대중행사 (상업적 성격)	콘서트/행사	평일	일570,000원	
			주말/공휴일	일670,000원	평일의 약 120%
직접비	냉난방비			회당100,000원	1회 4시간 기준
	전기사용료			회당50,000원	1회 3시간 기준
기타	리허설/준비대관		오전 (09~12시)	기본대관료의 40%	종료시간 기준
			오후 (13~17시)	기본대관료의 60%	
			야간 (18~22시)	기본대관료의 80%	
			<del>철야 (22시 이후)</del>	<del>기본대관료의 150%</del>	
	철수 대관			공연종료 후 당일 3시간 무료	3시간 초과 및 익일 철수시 준비대관료 적용

## 소극장 부대장비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품목	기준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녹음(CD)	1회	50,000원	재료비 사용자 부담
	Wireless Mic	1ea	10,000원	핀 마이크/배터리 사용자 부담
	Dynamic Mic	1ea	5,000원	
	Condencer Mic	1ea	10,000원	
	Main Speaker	1일	50,000원	(L/C/R/Sub/F.F)
	Digital Mixer	1일	30,000원	
	Monitor Speaker	1ea	10,000원	
조명장비	Follow Spot HPZ2511D	1ea	20,000원	보유 수량 1ea
	Strobe	1ea	10,000원	보유 수량 1ea
	1Kw Fresnel	1ea	1,000원	보유 수량 40ea
	S-4 Standard &Zoom	1ea	1,000원	보유 수량 stander- 50ea zoom- 30ea
	Par(64)	1ea	1,000원	보유 수량 30e
	Par(46)	1set(8ea)	2,000원	보유수량 3set(24ea)
무대장치	덧마루	33m <sup>2</sup>	100,000원	
	오케스트라 라이저	1식 1작품	100,000원	
영상장비	프로젝터	1ea	30,000원	5,000 ANSI
악기	야마하 그랜드피아노 (C7)	1대 1일	70,000원	조율비 별도

## 장도 야외공연장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품목	기준	사용료	비고	
야외공연장	순수예술/복합장르 공연		1회 5시간	1,200,000원	부대장비사용료 별도
	대중콘서트/행사		1회 5시간	1,800,000원	
	전시/리셉션		1회 5시간	800,000원	
	준비/철수대관		일	700,000원	-
스태프 추가 지원	음향/조명 디자인		1작품	1,500,000원	-
	무대/조명/음향 등 기술인력 지원		1회 8시간	100,000원	-
기타	촬영대관		4시간	3,000,000원	장도 지역 예술마루 전체 공간 적용
	TV녹화 / 중계 (전시/공연관련)		1회	200,000원	녹화시설 사용료 (방송국 부담)
	라디오/인터넷		1회	200,000원	
	환경 정리금		대관자 미반출시	200,000원	대관자 반출시 50,000원
※ 사용자 부담	음향 녹음 시 CD 등은 사용자 준비				
	조명 포그머신 용액, 드라이아이스, 컬러필터 등은 사용자 준비				
	무대 댄스 플로어 사용시 부착테이프 및 인력은 사용자 준비				
	사용자 준비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사양으로 준비해야 함				
	무선마이크 배터리 : AA 배터리 6개 (1EA 당)				
	댄스 플로어 테이프 : haalequin (1통, 약 10L, 100,000원)				
	드라이아이스 : 사양 관계 없음 (1 box 2~3만원)				

# 전시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 전시실 대관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면적	대 관 료	비고
1 전시실	492m <sup>2</sup>	일 300,000원	10:00~18:00 8시간 기준
2 전시실	180m <sup>2</sup>	일 170,000원	
3 전시실	185m <sup>2</sup>	일 170,000원	
1+2 전시실	672m <sup>2</sup>	일 370,000원	
1+2+3 전시실	857m <sup>2</sup>	일 500,000원	
장도 전시실	409m <sup>2</sup>	일 250,000원	

## 전시실 부대장비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상세	보유량	사용료	비고
가벽	366X244X45cm	4	50,000원	전시 회당 기준
가벽	244X244X45cm	4	50,000원	
좌대	40X50X90cm	4	5,000원	
	40X50X90cm	5	5,000원	
음향 장비 시스템	Amp, Mic	1조	일 200,000원	
기타잡기	단상, 프로젝트	1조	일 50,000원	

※ 위 대관료는 전시실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기준이다.

전시실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추가 시간의 대관료는 1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시간당 단가를 적용한다.

※ 전시준비 또는 작품철수 등을 위해 기준시간(09:00~18:00)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추가시간의 대관료는 2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일일 대관료의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며, 작업시간은 전시실의 시설안전 및 보안유지 관계로 22:00까지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하게 22:00 이후 심야작업(익일 09:00까지)이 필요한 경우 심야작업 사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추가 시간의 대관료는 2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여 일일 대관료의 150%를 할증 적용한다.

※ 전시관련 도록 판매 외에 기념품 등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 판매점을 설치할 경우 시설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의 별표와 같이 사용료가 부과된다.

※ 전시기간 중에는 작품의 보호를 위하여 기타 방송, 영화, CF 제작을 위한 대관이 불가능하다. 전시 주최 측에서 전시홍보를 위한 방송 또는 CF 제작을 위하여 촬영을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육장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분	수용인원	대관료(원, VAT포함)		보유 기자재 (무료)	비고
		기본 (4 시간 기준)	추가요금 (시간 당)		
3F 다목적실	60명	100,000	2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냉·난방기</li> <li>• 빔프로젝트, 스크린</li> <li>• 음향시설, 마이크</li> </ul>	
6F 교육실 1~4	18명	40,000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빔프로젝트, 스크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실3’ 만 기자재 보유</li> <li>• 2개실(1+2/3+4)로 확장하여 사용가능</li> </ul>
7F 다목적실	60명	100,000	2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냉·난방기</li> <li>• 빔프로젝트, 스크린</li> <li>• 음향시설, 마이크</li> </ul>	
장도 교육실	20명	40,000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냉·난방기</li> <li>• 빔프로젝트, 스크린</li> <li>• 음향시설, 마이크</li> </ul>	

#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과태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 부과)의 규정에 의거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19년 8월 29일

##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8. 29. ~ 2019. 9. 12.(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위 공고기간이내에 '여수시 도시미화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여수시 도시미화과'로 이의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최초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증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여수시청 도시미화과(여수시 여서1로 101, 2층 ☎ 061-659-3835, fax 061-659-5824)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여서동 103-7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1,075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여서동	103-8	117.11	8	722	"	
	103-9	68.87	8	353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8. 29.

여 수 시 장